

건설기술분쟁에서 쟁점들



고영희 성장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1. 건설기술분쟁유형

건설은 기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 유지관리, 철거 과정을 거친다. 건축이 종합예술이라고 불리는 만큼 건축생산과정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함께 얽혀있다. 건설 분쟁에서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건설분야 산업재산권 분쟁 :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가설비계 설비를 위한 삼각밭 지구 사건, 투수콘크리트 사건, 지지핀 사건 등이 널리 알려졌다.
2. 건축설계저작권 분쟁 - 최근 들어 제법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쟁이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마스터플랜 도용사건이 대표적 사건이다. 건축 중 설계저작권이 문제될 때 공사금지청구를 받아 줄 것이냐가 관심사이다.
3. 건설클레임 성격의 분쟁 : 주로 계약조건의 이행책임에 관한 것으로, 설계변경 등 계약조건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이견이 생긴 경우가 대부분이다.
4. 건축물의 하자책임 : 계약이행을 둘러싼 분쟁의 한 종류다.
5. 건설신기술지정과 그 취소를 둘러싼 분쟁
6. 재건축, 재개발을 둘러싼 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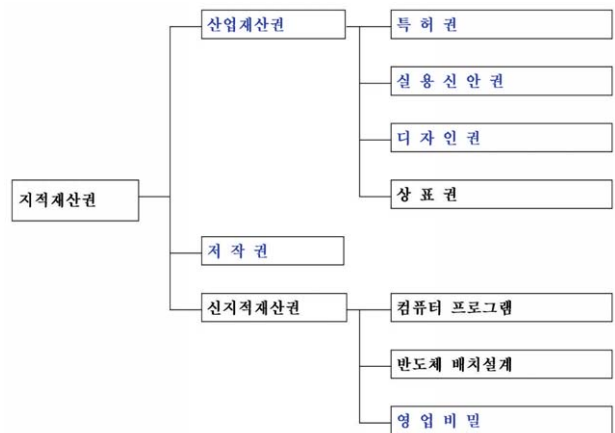
2. 산업재산권에서 건설기술분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사상으로 정의하며, 발명 가운데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갖춘 기술을 개발한 사람에게 독점 배타로 사용할 수 권리(특허권)을 준다.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는 특허청구범위 해석이 핵심 쟁점이다. 이 사건이 생길 때에는 선행기술을 조사해야 할 필요성도 자주 생긴다.

특허 관련 분쟁은 성격에 따라 다음 3가지 가운데 하나 절차로 해결한다.

- 권리형성 관련 :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
- 권리침해 관련 :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 특허행정 관련 :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지적 재산권 체계

3. 건축설계저작물을 둘러싼 분쟁

3.1 건축설계도 저작권 침해사건사례

▣ 에메랄드관광호텔 사건¹⁾

사건 당사자로 원고는 건축사 김 진영, 피고는 에메랄드관광호텔이고, 사건의 경과 및 개요는 다음과 같다.

1990년 5월 15일에 원고는 피고에게서 일본 미에현에 건설할 그랜드호텔의 기본설계와 자문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1990년 7월 17일에 기본구상을 설명하였다. 원고는 1990년 8월 1일경에 모형도 10여개 안과 투시도 14개 안을 슬라이드 필름으로 제작하여, 피고에게 1990년 8월 30일 기본설계구상을 브리핑하고 회사 내 협의를 위해 2개안의 모형도와 투시도를 일시 맡겨달라는 피고의 요구에 피고회사에 저작물을 맡겼다. 원고는 1990년 9월초에 기본설계비 견적서를 교부하였으나 피고는 도급계약을 미루었고, 원고는 1991년 4월 25일경 피고에게 기본구상을 다시 설명하였고, 피고는 기본설계비 액수에 동의하고 5월초 일본에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하였다. 원고는 1995년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일본에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대기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서를 작성하려하지 않았고, 원고는 기본설계도 중 평면도와 입면도를 완성하지 않은 상태로 두었다.

1995년 10월에 원고는 자기가 저작한 제1안의 모형과 투시도를 모방하여 그와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게 모조한 모형, 투시도, 평면도, 입면도를 일본인 건축사에게 교부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해 달라고 도급시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은 '원고는 호텔의 모형도 10여개 안과 그에 따른 투시도 14개 안 등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되었고, 그 건축저작물을 변형, 모방해서 모형도 및 투시도를 포함하는 기본 설계도 등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2차적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소외 핫토리 건축사에게 원고의 건축저작물을 모방, 변형하도록 도급시키고 그대로 건축허가를 받아낸 행위는 2차적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이다. 피고 회사가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입힌 손해액은 원고가 그 권리를 행사하였으면 통상 얻을 수 있었을

금액이고, 기본 설계도 저작의 통상 도급금액이 4억7000만원 정도이고 원고가 저작한 위 모형 및 투시도는 기본 설계도 저작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므로 원고의 저작권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금액은 2억8200만원이므로 원고에게 이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분쟁사건은 건축저작물을 모방, 변형하도록 도급시키고 그대로 건축허가를 받아낸 행위는 원고의 2차적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명백한 사실을 확인해 준 점에서 의의가 크다. 건축저작물의 경우 건축주가 건축사에게 기본설계를 의뢰한 다음 건축계획을 연기한다든지 변경한다는 핑계로 당초 설계자를 따돌린 다음 다른 건축사에게 의뢰하여 건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당초 설계자는 자기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 사례는 우리나라 건축저작권 분쟁에서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 미국의 건축저작권 침해사건

우리나라에서는 건축저작물의 침해여부를 판단할 범위를 파악할 만한 사례를 찾기 힘들므로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다. 건축저작권의 침해여부는 그것을 판단하기가 간단하지 않으나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판단 방향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건축저작물 보호법²⁾이 처음 법원에서 다뤄진 것은 Value Group v. Mendham Lake Estates 사건에서이다. Value Group은 고급 주문형 주택을 지리적 환경이 좋은 곳에서 지어 팔고 있었는데 이곳에는 피소된 Mendham Lake가 유일한 경쟁자였다. Value Group은 건축 평면도를 개발하였고 'Estate House I' 이라고 명명하여 한 세대용 집을 위한 안내 책자를 만들었다. 안내 책자에는 축소된 평면도와 3차원의 예술적인 입면도를 담고 있었다.

Value Group은 Estate House I 을 1992년 봄에 건축을 완료했다. Value Group에게 같은 개발지역 안에서 두 번째 Estate House I 을 지으려했지만 Value Group은 이를 거절하였는데 이유는 만약 같은 지역 내에서 두 번째 Estate House I 을 짓는다면 개발 지역의 특성을 해칠 뿐 아니라 유사하게 보이는 것을 금지하는 시정조례를 어기기 때문이었다. 이와 거의 비슷한 시간에 피고인 Mendham Lake는 Value Group를 접촉하여 인근 개발 지역에 Estate House

1) 사건번호 95가합52463 서울민사지법 1995. 8. 18 선고

2)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Act 1990

I 을 짓기 위하여 건축 평면도 사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하여 Value Group는 이를 같은 지역 조건에 짓는 Value Group의 프로젝트에 악영향을 주고 Value Group사와 경쟁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Estate House I 을 설계했던 건축사는 Mendham Lake에게 다른 평면도를 창작하여 제시하였지만 Mendham Lake는 이를 거절하였다. 얼마 뒤 Mendham Lake는 Value Group에게 Estate House I 과는 다르지만 Estate House I 을 수정하고 도면을 다시 그려 새로운 설계를 했다고 알려 주고 수정 설계도로 건축물을 짓겠다는 뜻을 보였다. Value Group은 Mendham Lake house가 건설 초기 단계일 때 저작권 침해로 이유로 Mendham Lake사를 제소하였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request for a 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하였다.

침해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리기 위한 충족조건을 검토한 뒤 판사는 원고에게 (1) Value Group이 저작권자임과, (2) 피고가 Value Group의 평면계획과 도면을 베꼈다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판사는 비록 유효한 저작권 등록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효성의 우선 증거가 된다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약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Value Group의 평면계획과 도면, 그리고 안내 책자를 통해 첫째 조건은 만족되었고, 다음으로 피고의 무단 복제 부분으로 넘어갔다. 무단복제 부분은 상황증거로 이유 있음에 대한 심증을 굳혔고 피고의 건축물은 Value Group의 것과 '실질적으로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하여 침해 금지 명령을 내리면서 판사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이 법정은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가처분 명령을 내린다, 피고는 저작권자의 건축 작품을 침해하는 공사를 중지하고 그 작품을 더 이상 사용하거나 수정, 또는 복제를 하지 말라.”

Value Group사건 이래로 법원은 저작권법에서 주거용 건물의 설계, 단층의 사무소, 전시용 건물, 창고 건물의 설계를 보호받는다 판시하고 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저작권이 있는 판촉용 안내 책자에 구현되어 있는 설계들이 침해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문에서 파악해 보면 '표준 설계 요소(standard features), 즉 방, 문, 창문, 지붕, 선 따위는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표준 설계 요소들을 특별히 선택하거나 배열하거나 조합하는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법원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를 보면 (1) 두 건물이 톱니형 출입문과 파라펫 벽을 통상과는 달리 표현하고 있다, (2) 보통의 관찰자가 건물의 길이,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벽돌을 쌓았고, 건물의 입면이 서로 비슷하다고 판단한다, (3) 대지에서 건물의 배치, 조경, 주차장 공간, 수직 교통의 패턴이 실질상 같다 와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한다.

특정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할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비록 식민지 스타일의 가옥을 구상한 idea 그 자체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Richmond Homes가 설계한 개별의 배치계획, 즉 Louisia 설계를 특정하게 표현한 것들(길게 늘인 A자 2개의 프레임에 두어 부동산 소개소 목록에서 광고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면을 부각시키는 설계; 건물의 전면과 후면의 지붕의 물매가 서로 다른 설계; 이중 창문; 팔각형의 배기창; 가옥의 전면 쪽에 가족실을 둔 설계 등)은 이 법원이 침해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idea를 표현한 것이다.’

미국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건축저작물의 저작권 침해판단에서 참고할 내용이다.

① 건물이 톱니형 출입문과 파라펫 벽을 통상과는 달리 표현하고 있는 데 이와 유사하게 모방한 경우 ② 보통의 관찰자가 볼 때 건물의 길이,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벽돌을 쌓았고, 건물의 입면이 서로 비슷한 경우 ③ 대지에서 건물의 배치, 조경, 주차장 공간, 수직 교통의 패턴이 실질상 같은 경우

그러나 우리나라와 미국의 건축 관행에 차이가 있고, 저작권은 주관적 창작인 관계로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는 우리나라에서 건축저작물에 대한 침해사건의 판결에서 침해로 인정하게 될 때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 월드컵주경기장 주변지역 마스터플랜 도용사건³⁾

이 사건은 수색지구 택지개발 기본계획의 저작권자인 (주)하우덴지니어링중합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문 홍길)가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 컨소시엄의 주간사인 삼성엔지니어링과 정립중합건축사사무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이다.

3) 사건번호 95가합52463 서울민사지법 1995. 8. 18 선고

이 사건은 1998년 9월 21일 서울시가 상암동 주경기장 실시설계 및 시공업체로 발표한 삼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의 작품내용이 보도되면서 (주)하우드가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가처분 신청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이 더 이상 (주)하우드의 설계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에 따라 화해하였고, 본안소송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피고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고는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고등법원에서 변론이 진행되는 중 판사의 강제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 한양대 종합기술연구원(HIT) 저작권 침해사건⁴⁾

당초 15000평 규모의 기본설계가 완성되어 진행하던 중 외환위기로 규모를 약10000평 규모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원설계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원설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원설계를 바탕으로 규모를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생긴 사건으로 서울지방법원 조정으로 종결되었는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배상 등을 결정하였다.⁵⁾

4)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46940

5) <유명 건축물, 알고보니 설계 무단도용>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 한국건축문화대상 입선작으로 선정됐던 유명 건축물이 다른 건축가의 기본설계를 도용해 만든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조관형)는 최근2000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준공건축물분야 입선작인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한양종합기술연구원의 실시설계를 맡았던 모 종합건축사무소에 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건축사무소가 손해배상소송 원고인 이 학교 건축공학부 이강업 교수의 기본설계를 본인 의사와 다르게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해명서를 일간지, 한양대 건축동문회보,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월간지 등에 신도록 명령했다.

소송을 낸 이 교수는 "당초 이 건물의 계획설계를 맡았으나 1998년 경제위기로 기존설계가 백지화되면서 재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무소가 내 설계를 무단도용, 수정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초공사가 완료되고 지상골조공사가 진행되던 1999년 3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건축사무소에 강력히 항의했으나 무시당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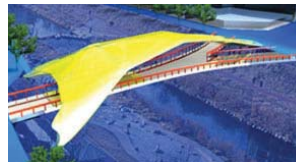
문제의 건축사무소는 지난 2000년 이 건물 설계를 건설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등이 공동주최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 공모전에 출품해 대한건축사협회회상을 받기도 했다.

이 교수에게 건축설계 저작권 관련 조언을 했던 고영희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겸 대한기술사회 회장은 "건축설계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무시하고 남의 설계를 무단도용하는 경향이 만연한 업계에 경종을 울린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문제의 종합건축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연합뉴스의 전화문의에 "이 사건에대해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분들이 모두 자리를 비웠다"며 "다 끝난 일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solatido@yna.co.kr 연합뉴스 2003-09-04 05:00:08

▣ 청계천 새벽다리 표절 논란⁶⁾⁷⁾

중인 서울 청계천에 세워질 다리 디자인에 대한 표절 논란이다. 건축 디자이너 이광섭씨(28)는 서울 방산종합시장과 광장시장을 잇는 '새벽다리'의 디자인이 자신의 작품 '그대와 나'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불거진 사건이다.



<그대와 나 - 이광섭>



<새벽다리>

2개의 △교량 전체에 하나로 된 삼각형태의 막을 씌운다는 핵심 주제가 같고 △2개의 삼각형을 거꾸로 포개놓은 듯

6) 2003카합3655 계획설계안사용금지가처분 2003.12.29 선고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나 급박한 보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7) 청계천 새벽다리 디자인표절 논란

복원공사 중인 서울 청계천에 세워질 다리 디자인을 놓고 표절 논란이 일고 있다. 건축 디자이너 이광섭씨(28)는 서울 방산종합시장과 광장시장을 잇는 "새벽다리"의 디자인이 자신의 작품을 표절한 것이라고 28일 주장했다.

이씨는 "새벽다리의 디자인이 2002년 11월~2003년 1월에 있는 서울시의 '청계천 교량 아이디어 국제현상 공모'에 응모했다가 낙선한 나의 작품 '그대와 나'를 베낀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교량 전체에 하나로 된 삼각형태의 막을 씌운다는 핵심 주제가 같고 △2개의 삼각형을 거꾸로 포개놓은 듯한 외관 등 세부사항도 같으며 △설계업체가 자신의 작품을 서울시에서 받았다는 점 등을 표절의 근거로 제시했다.

앞서 이씨는 이 다리의 시공을 맡은 L건설, 교량설계를 담당할 S건설기술공사, 경관설계를 한 E설계사무소의 A씨를 올 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시는 공모전이 끝난 뒤 당선작과 낙선작을 CD에 담아 참고용으로 시공업체에 배포했으며, S건설기술공사측은 2003년 5월 다리 디자인을 완성했다.

그러나 L건설측은 이씨의 주장에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 새벽다리 설계자인 A씨는 "이씨의 작품은 교량 끝이 Y자로 갈라졌지만 새벽다리는 그렇지 않은 점 등 다른 부분이 많다"며 "이씨의 작품은 항의를 받고서야 봤다"고 말했다.

또 S건설기술공사 관계자는 "시가 공모작 아이디어를 기본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라고 권장까지 했는데 우리가 이씨의 아이디어를 빌렸다면 그 사실을 왜 숨기겠느냐"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L건설 턴키설계팀 관계자는 "막 구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라며 "제3자가 보면 외관이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이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말했다.

장광명기자 tesomiom@donga.com 동아일보 입력 2004-05-28 19:08

8) 2004년 형 제18878호 서울중앙지검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

한 외관 등 세부사항도 같으며 △설계업체가 자신의 작품을 서울시에서 받았다는 점 등을 표절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광섭씨는 이 다리의 시공을 맡은 L건설, 교량설계를 담당한 S건설기술공사, 경관설계를 한 E설계사무소의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 오창 아파트 평면도 도용사건⁹⁾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에 아파트를 분양 중인 E건설은 뒤 이어 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사업자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하여 분양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 1심에서 법원은 '건축물에 의하여 표현된 미적 형상으로서의 전체적인 디자인에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 이 사건 도면의 경우 창작성이 인정할 디자인 요소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면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평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수요자의 주요 관심사항이고, 주택사업자는 수요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는 평면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을 쏟고, 실제 설계자의 피를 말리는 작업이 새로운 평면의 창작인 점을 감안할 때 판결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 사건은 아래 건축설계도서의 창작성 인정과 관련하여 심각한 결정이다. 원고는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고를 제기하여 다투었지만 고법에서도 기각하였다.¹⁰⁾



<원고의 분양안내서 도면>

<피고의 분양안내서 도면>

▣ 서울 인공섬 디자인 표절 시비

서울시가 주최한 한강 인공섬 설계 공모전의 당선작 '한강의 꽃'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공모에 참여했던 세계음악공원 컨소시엄은 "지난달 30일 서울시가 발표한 당선작 '한강의 꽃'(솔플로라 컨소시엄 출품작)은 2003년 중국 선양(瀋陽)시 인공호수의 '어린이 궁전' 국제공모에서 당선된 건축가 김영섭 성균관대 교수(서울시 디자인위원회 부위원장)의 '장미'와 콘셉트나 외형이 같은 모작"이라고 6일 주장했다. 세계음악공원 측은 "김 교수의 '장미'는 국내외 잡지에도 소개됐는데, 한강에 같은 것을 띄운다면 저작권을 가진 선양시가 국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강의 꽃'을 설계한 해안건축은 6일 "꽃이라는 주제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디자인"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도 "당선작을 본 김 교수가 '모작은 아닌 것 같다'고 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김영섭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외관이 흡사하다. 당선된 측에서는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꽤 씁시다"며 "공무원들 목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진술서를 써준 것"이라고 말했다.¹¹⁾

반포대교 옆에 조성되는 인공섬은 2011년 세빛둥둥섬이란 이름을 달고 문을 열었다. 당선작을 둘러싼 시비, 이에 대응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 <한강 인공섬 조성 공모 당선작인 '한강의 꽃'(왼쪽)과 2003년 중국 선양시 공모 당선작 '장미' 조감도. 겹겹이 붙은 꽃잎 형태로, 건축 라인(빨간 선)이 흡사하다는 지적이다. (세계음악공원 제공)

3.2 건축저작권 보호상 몇 가지 문제

▣ 건축저작물의 범위

저작권법 제4조에는 저작물을 열거로 예시한다. 그 중 하나가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9)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 사건번호 2004가합976 분양금지 등 가처분
 10) 서울고등법원 제25 민사부, 2004라312 분양금지 등 가처분

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4/06/2008040600948.html

건축저작물' 인데 건축저작물로 포함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통상 건축물이라고 하지만 건축설계자가 건축물이라 할 때에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로 받아들이기 쉽지만 저작권법상의 건축물이 반드시 건축법상의 정의를 따를 이유는 없을 것이다. 건축법상의 공작물도 창작물인 이상 여기에서는 건축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설계도서라 할 때 단순히 도면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건축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¹²⁾ 기계설비 등 설비도면, 나아가 수량 산출서 등 설계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저작권법의 취지로 보아 설계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12) 표준건축시방서에 관련하여 흥미있는 사건이 있다.

건설 표준시방서 저작권 논란

인터넷 올리자 토목·건축학회 등 소송/책 안팔려 피해; '정부 소유' 맞서

건설공사 시공 방법을 규정하는 표준시방서의 저작권도 보호되는가? 정보업체가 표준시방서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데 대해, 표준시방서를 만든 연구단체와 출판사가 저작·출판권을 보호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 도서출판 기문당 대표 강해작씨 등은 지난달 서울지방법원에 인터넷정보업체인 한국건설정보시스템(www.cn.co.kr) 대표 권중복씨를 상대로 저작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10일 첫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토목·건축학회는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작성했으며 강씨는 학회들과 출판계약을 맺고 표준시방서를 책, 시디롬으로 제작·판매하고 있다.

강씨 등은 "권씨가 표준시방서를 무단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공개하는 바람에 책이 팔리지 않는 등 저작·출판권이 침해됐다"며 인터넷 게재를 중지시켜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대해 건설정보시스템은 "표준시방서는 건설공사 적정 관리를 위해 국민의 세금을 써 제정한 설계·시공 기준서"라며 "일부 지정 출판사의 판권 이익을 위해 모든 건설현장에 널리 알려야 할 기준서의 무료 보급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강혁 기자 lkh@hani.co.kr [한겨레] 1999-12-09 (경제) 뉴스 07면

법원 "건축물 '표준 시방서' 독점사용 저작물 아니다"

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향상을 위해 시설물별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리한 '표준시방서'는 공익적 성격상 저작권자가 독점 사용권을 갖는 저작물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 부장판사)는 1일 대한건축학회 등이 "95년 주택공사 등의 설계기준을 정리한 표준시방서를 작성했으나 인터넷 사업자인 권씨(중복)가 표준 시방서를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표준시방서는 건축 공사의 표준 시공기준을 설정해 두고 이를 시공자에게 널리 알려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표준시방서의 공익적 성격에 비춰볼 때 배타적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한건축학회 등은 95년부터 표준시방서를 작성한 뒤 책자로 판매해 왔는데 인터넷에서 건설정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권씨가 표준시방서를 홈페이지에 올리자 지난달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승련 기자>srkim@donga.com 동아일보 2000/03/01 19:31

점은 배른협약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 개정된 미국저작권법상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다.¹³⁾

■ 창작성 문제

저작권법상의 정의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하여 창작물일 것을 요구한다. 통상 저작물은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만 창작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특히 건축저작물이라 할 때 건축저작물이라는 정의도 명확하지 않거니와 건축물의 특정 부위의 설계도서(예를 들어 커튼월 설계, 창호설계, 무대설계, 설비공사설계 등)에 대하여 창작성이 없다는 이유로 저작물을 부인하는 판결문을 볼 수 있다.¹⁴⁾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판단은 창작성을 오해한 것으로 생각한다. 저작물에 요구하는 창작성은 용어의 종류에 불문하

13) 미국 저작권법에서는 An "architectural work" is the design of a building as embodied in any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 including a building, architectural plans, or drawings. The work includes the overall form as well as the arrangement and composition of spaces and elements in the design, but does not include individual standard features 이라고 정하여 모든 형태의 성과품을 포함한다.

14) 다음은 인터넷에서 검색한 기사로 1심과 2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2심판결] "설계도면 도용 유죄" 서울지법 항소심 [동아일보]

서울지법 형사합5부(조용구·趙鏞龜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삼성 SDS의 지하철 통신설비공사 설계도면을 도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LG산전 철도시스템팀 주모 팀장(42)과 김모 과장(38)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LG산전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에 처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설계도면은 화상전송 방식과 장비의 배치, 배선 등에 관한 창작적 표현물로 저작권이 인정된다"며 "삼성이 많은 돈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기술 도면을 LG측이 명칭과 로고만 바꿔 이용한 것은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주 팀장 등은 99년 6월 실시된 광주 지하철 1호선 통신설비 납품 입찰에서 삼성측과 유사한 화상전송파트 설계도면을 제작해 응찰했다가 삼성측의 고소로 2000년 불구속기소됐으나 "설계도면은 창작적 저작물이 아니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1심판결]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판사는 8일 삼성 SDS의 지하철 통신설비공사 설계도면을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LG산전 철도시스템팀 주모팀장(41)과 화상전송 설비업체인 (주)거산 이모대표(55)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술적인 시스템 구축 방법 등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만들어진 설계도는 창작적 요소가 많지 않아 유사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쟁사의 설계도면을 그대로 복제하지 않은 이상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99년 6월 실시된 광주 지하철 1호선 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LG산전이 사업자로 선정되자 삼성 SDS는 설계도면을 도용당했다며 검찰에 주모장 등을 고소했다.

<신석호 기자>kyle@donga.com

고 독창성을 의미하지 저작물의 진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원어로서 말하면 Originality이지 Creativity는 아니라는 뜻이다. 즉 창작성이란 저작물의 기원(Originality)이 저작자에게 있으면 다른 저작물을 도용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더구나 창작성을 예술성으로 확대하여 예술과 전혀 관계 없는데 무슨 저작물이라는 주장을 한다면 곤란할 것이다.¹⁵⁾

4. 건설기술분쟁에 관련한 몇 가지 생각

4.1. 건설신기술 지정요건은 국내 선행기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설신기술지정처분 취소사건(사건번호 99구4166, 원고 재육공업, 피고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문을 보면 기술에 관한 법을 해석하는 법원이 법해석을 잘못함으로써 기술에 관한 제도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 같아 착잡하다.

1999년 11월 23일자 위 판결문에서 ‘…신규성, 유일성, 진보성의 충족여부는 원칙적으로 국내 선행기술과 비교를 통하여 판별하여야 하는 것이지, 외국 기술과 비교를 통해 판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먼저 지정된 신기술을 기준으로 진보성 등을 만족해야 하므로 먼저 지정받은 건설신기술(먼저 지정된 신기술이 어느 정도 진보성을 갖고 있는지 상관없이)을 기준으로 뒤에 지정받은 신기술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에는 신기술 지정요건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유일성·진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되짚어 보자.

첫째, 건설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기술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이다. 이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외국에서 도입하였지만 개량 발전시킨 기술을 그 대상으로 한다. 외국기술을 개량 발전시킨 것은 역시 세계 최초가 될 것이므로 역시 대상기술은 세계 최초의 기술이어야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둘째, 지정 요건을 신규성, 유일성, 진보성을 가져야 하지

만 세계적 기준이 아닌 국내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신규성, 유일성, 진보성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즉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어야 하므로 선행기술은 국내 기술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다만 그 판단수준은 국내의 건설기술수준을 고려하여 국내를 기준으로 신규성, 유일성,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특허제도에서 특허독립의 원칙과 상통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기술은 특별히 선구자 기술이 아니면 대개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한다. 이 사건의 대상인 된 테크플레이트 기술은 선구자 기술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선행기술이 무엇이 될 것인가는 자명하다.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후속기술이 개발되면 후속기술의 진보성 정도는 선행기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순리이다. 따라서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인 경우 신기술 요건을 판단할 기준은 당연히 도입한 외국기술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국내 기술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생각한다.

건설신기술이 먼저 신청하여 먼저 지정받은 것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에서 먼저 신청한 즉 선원을 문제 삼지 않고 실제 지정고시한 신기술 사례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즉 건설신기술 지정요건에서 선원을 요구하지 않는다. 법 목적이 건설기술의 향상에 있지 누가 먼저 신청하여 먼저 지정을 받았느냐의 문제는 아니고, 누가 뛰어난 즉 진보성이 있는 건설기술을 개발했느냐의 문제이다. 따라서 먼저 개발했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단지 먼저 지정받은 사실만으로 뒤에 신청한 기술을 배척한다는 판단은 법 목적과 상치된다.

그런데 위 판결문에서 법원은 먼저 신기술로 지정받은 기술을 기준으로 뒤에 신청한 기술의 진보성을 판단하고 있다.

먼저 지정받은 기술이 외국기술을 가져와 약간 변형만 시킨 기술인데 먼저 신기술지정을 받았고, 먼저 지정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기술이 핍박을 받는다면 이는 적반하장이 아닌가. 만약 먼저 지정받은 신기술이 잘못 지정받은 것이면 어쩔 것인가.

4.2. 똑같은 시험방법이 아니면 시험치를 부정한다?

건설신기술지정처분 취소사건(사건번호 99구4166 1999년 11월 23일 판결, 원고 재육공업, 피고 건설교통부 장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문을 좀 더 살펴보자.

위 판결문 8쪽 중간에서 ‘…원고의 공법과 이 사건 공법은 모두 재래식 공법을 개량하여 거푸집 대응으로 개발된 테크

15) 건축저작물의 창작성 판단에 대한 판례평석은 계간 저작권 2005 가을호 제71호 참조

플레이트의 구조적인 성능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으로 ① 데크플레이트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와 결합력을 확보한다는 점, ② 두 가지 공법 모두 2시간 내화성능을 확보하고 있어 구조물에 대한 별도의 내화피복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③ 시공 방법에서도 데크플레이트 상부에 철근대신 스페이스와 메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두 공법에 사용되는 데크플레이트의 단면 형상을 비교해 보면 ① 록킹 리브의 형태에서, 원고의 지프테크는 상부에서 삼각형으로 패여 들어간 형태로 되어 있지만 켄테크는 측면판의 상부에서 사다리꼴 모양으로 돌출된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 ② 상부판 홈의 개수가 지프테크는 1개이지만 켄테크는 2개라는 점, ③ 엠보싱의 형상 및 방향이 지프테크는 수평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지만 켄테크는 직사각형에 가까우나 모서리 부분을 약간 둥글게 절곡한 형태의 엠보싱이 경사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점 등의 차이가 있다고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신기술 판단 기준을 먼저 지정된 기술로 설정하여 판단한 것은 잘못됐다.

위 사건기술은 합성 데크플레이트이므로 이 분야에서 건설신기술 지정 요건을 만족시키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데크플레이트는 구조재로서 구조적인 성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면 형상이 전체적으로 사다리꼴을 가져야 함은 지극히 상식이다. 그리고 데크플레이트가 콘크리트와 합성되어 일체로 거동하기 위해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가 일체로 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합성데크플레이트의 성능은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가 일체로 될 수 있는 수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좌우된다.

합성데크플레이트의 발전정도는 일체화시키는 수단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원고의 공법(지프테크)과 이 사건 공법(켄테크)에 사용하는 데크플레이트의 형상은 위 사실 인정대로 서로 다르다. 합성데크플레이트의 성능은 구조물에 하중이 걸릴 때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가 서로 분리되지 않아야 합성 작용을 할 수 있다.

서로 분리되지 않게 저항하는 힘은 전단부착력이다. 전단부착력이 커야 큰 하중에 견딜 수 있다. 그리고 전단부착력이란 콘크리트와 데크플레이트 사이의 평면에 작용하는 단위면적당 저항력의 크기이므로 콘크리트 강도 즉 콘크리트의 양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에 관련된 시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8일 양생 후 시행하는 것은 이 분야의 기술자에게 상식에 속한다. 콘크리트가 제 강도를 가진다는 전제하에서는 데크

플레이트의 구조적 성능은 전단부착력에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가력 방법, 시험체의 크기, 시험할 때 온습도 조건 등은 전단부착력을 결정하는데 미세한 영향 요인일 뿐이다.

위 판결문 11쪽에서 ‘...원고의 전단부착력이 1.87kg/cm², 이 사건의 전단부착력이 6.17kg/cm²으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실험방법을 통해 비교, 검토된 것이 아니므로... 더 우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하고 있다.

구조역학에 약간의 상식만 있어도 명확한 문제가 아니던가. 만약 재판부가 진보성을 판단함에 전단부착력의 크기가 중요하지만 판단할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심증을 굳히기 힘들었다면 기술자의 자문을 구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기준에서 시행한 시험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판단하였어야 하지 않을까. 양 기술의 차이를 건설기술자의 눈으로 비교한다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하다.

4.3. 판사, 대리인의 전문성

건설사건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인데도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이를 판단하는 재판부 모두 전문성이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법원은 건설전문 재판부를 만들어 전문성을 높여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건설분야를 전공한 판사가 건설분쟁사건을 맡으면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4.4. 감정인과 조정위원, 전문심리위원의 전문성

법원은 전문성을 보충하기 위해 감정인과 조정위원, 그리고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한다. 이들은 기술분야 전문성이 있지만 민법과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법적 지식이 부족하다. 공학분야에서도 법에 대한 기본지식을 공부시키고, 전문 자격사 시험에도 기본 법과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6. 정리

건설분쟁에서 대표 유형과 현재 건설분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건설분쟁은 전문성이 강함에도 이를 분쟁해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건설분쟁이 전문성을 많이 포함한 사건이란 점을 이해하고 근본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하겠다.